

1. 의결주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특정소방대상물 증축 등의 소방시설 특례 적용을 위한 방화문 인정기준을 건축법령의 특별피난계단 방화문 기준을 준용하고, 화재 발생으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대상의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며, 아파트 등 입주민이 세대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존부분과 증축되는 부분이 ^{현행}60분+방화문으로 구획될 경우 증축부분만 **현행기준을 적용**토록 특례 하던 것을 **60분 방화문도 인정** (안 제15조 별표2)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증축 시 증축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방화구획(자동방화셔터, 60분+ 방화문)은 기존부분에 대해 증축 당시 화재안전기준 미적용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제46조의 방화구획은 60분+ 또는 60분 방화문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64조(방화문의 구조)

- 6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 6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 3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강화(안 별표4)

1) 모든 지하주차장은 **화재조기경보**와 **신속진압** 가능토록 소방시설 개선

↳ 200㎡이상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200㎡미만 연결살수비상경보단독경보형 감지기

❖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관계부처합동('24.9.6.)

2) 공장 중 리튬1차 전지공장 **시각경보기** 설치

❖ 화재초기 시각 경보를 통해 신속한 피난유도('24.9.9./ 전지공장화재 재발방지대책)

3)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 추가('24.8.6./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안전영향평가 결과)

4) 도로터널의 **연결송수관설비** 설치기준 강화(1천m이상→500m이상)

❖ 터널 중 3등급(500m이상~1,000m미만)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다.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응성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 경우 면제 근거 마련(안 별표5)

❖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등)의 스프링클러 설비 적응성 비교검토 연구용역 결과 반영('23.12월)

라. 자체점검 준수사항(현행)에서 아파트 등 세대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 세분화**하여 과태료 예외기준 마련(안 별표 10)

* ㄱ (현행) 자체점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00만원)

ㄴ (개선) 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방법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0만원)

❖ 부과주체(입주민), 점검범위(전체점검 중 일부) 등을 고려, **예외적 기준** 필요

마. 명확한 **법령해석·적용**을 위한 정비(안 제7조제1항·제2항, 제37조제6호, 제46조, 별표2, 별표4, 별표9)

1)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하고, **동의대상 제외여부 명확화**

ㄴ 모든 주차장을 동의대상 확대, 비상조명등은 동의대상 제외

2)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소방공무원 등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명확화**

ㄴ 실무경력 적용기준 분리(제6호 → 제6호, 제7호)

❖ 6.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3)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구분**을 명확화

ㄴ 별표 3의 소방용품 중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을 규정(제1호~제4호)

❖ 별표 3의 소방용품(같은 표 제1호나목 > 별표 3 제1호[별표 1 제1호나목2])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대상의 **명확화**

ㄴ 층의 → 부분의, 이상인 것 → **이상인 경우** 해당부분

❖ 별표 4 제1호라목8) “랙이 설치된 **층의**” → **랙이 설치된 부분의**

별표 4 제1호바목5) “300㎡ 이상인 것” → “300㎡ 이상인 **경우** 해당부분”

6)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의 주된기술인력·보조기술인력 구분 삭제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위한 요건으로 주·보조인력 구분 불필요

❖ **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45조제1항 관련)

기술인력 등 업종별	기술인력(전)	기술인력(후)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	가. 주된 기술인력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1)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2)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3)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다.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라.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마.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일반 소방시설 관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1)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2)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특급 점검자 1명 이상 나.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다.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가목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를 “층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주차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은 제외한다)”를 “피난구조설비”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한다) 또는”을 “한다)로 구획되어 있거나”로, “한다)”를 “한다) 또는 같은항 제2호의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7조제6호 중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실무경력(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을 “실무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다만, 별표3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중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별표 2 비교의 제2호마목, 제3호가목 및 제4호 중 “자동방화셔터”를 각각 “자동방화셔터·60분 방화문”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8) 중 “랙식 창고(rack warehouse): 랙(물건”을 “랙(물건”으로, “것으”를 “창고시설”로, “층의”를 “부분의”로 하고, 같은 목 10)다) 중 “것 중”을 “층으로서”로 하며, 같은 호 바목5) 본문 중 “것”을 “경우 해당부분”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에 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에 1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에 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차목2) 중 “숙박시설”을 “숙박시설, 공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4) 중 “1천m”를 “500m”로 하며, 같은 호 다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물의 지하에 설치된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의 경우 해당부분

5) 건축물의 지하에 설치된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의 경우 모든 층

15) 건축물의 지하에 설치된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해당부분

5) 리튬1차 전지공장(리튬을 주요 전극재료로 사용하며, 충전이 불가능한 1차전지를 제조·가공·조립·보관 또는 충전 등을 하는 공장을 말한다.)

5) 건축물의 지하에 설치된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의 경우 해당부분

6)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미만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지붕과 외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물분무등소화설비	가.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차고·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응성있고 소화효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별표 9의 가.의 기술인력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란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1) 및 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란 다목(중전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1) 부터 3)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가.의 기술인력란 가목 중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를 “소방시설관리사”로, “사람”을 “특급 점검자”로 하며, 같은 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1) 및 2)을 각각 삭제한다.

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다.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라.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마.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나.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다.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별표 10 제2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7호	
별표 10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의 규정을 제외하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00
별표 10 제2호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방법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
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
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
는 시설

4. ~ 10.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
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
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
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
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
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
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
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
명등은 제외한다)가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
정소방대상물

2. · 3. (생 략)

③ · ④ (생 략)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
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3조제3
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
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
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나. -----

- 주차시설

4. ~ 10. (현행과 같음)

② -----

-----.

1. -----

-- 피난구조설비-----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
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생략)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이하 “자동방화셔터”라 한다) 또는 같은 영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4. (생략)

② (생략)

제3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

---. -----

-----.

1. (현행과 같음)

2. -----

----- 한다)
로 구획되어 있거나 -----
----- 한다) 또
는 같은항 제2호의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

3.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u>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u> <u><신설></u> <u>제46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u> <u>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의 소방용품(같은 표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중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을 말한다.</u>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소방공무원</u> ----- ----- ----- -- <u>실무경력</u>----- ----- ----- 7. <u>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u> <u>제46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u> <u>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다만, 별표3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중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u>
---	--